

醫 療 法 施 行 令

[1962. 4. 14 閣令第659號]

改正 1965. 7. 29 大統領第2184號

第1條 (定義) ① 醫療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19條 第2項에서 甚히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라 함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1. 學問的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治療行爲 (助產業務 및 看護業務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但 醫學發展에 必要한 治療行爲로서 保健社會 部長官의 認定을 받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2. 非道德的 治療行爲

3. 其他醫師會·齒科醫師會·漢醫師會·助產員會 및 看護員會(以下 中央會라 한다)에서 그 品位를 甚히 損傷시켰다고 認定하는 行爲

② 法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停止處 分의 期間은 3月 以上 2年 以下로 한다.

第2條 (醫療倫理委員會) ① 前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審査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長官所屬下에 醫療倫理委員會를 둔다.

第3條 (醫療倫理委員會의 組織) ① 醫療倫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委員 9人 以內로써 組織한다.

② 委員長 및 副會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은 醫療에 關하여 德望과 經驗이 있는 者 中 法第58條에 規定에 依한 中央會의 推薦을 얻은 者와 關係公務員 中에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

第4條 (委員의 任期)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5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會務를 統

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6條 (會議)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委員長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委員過半數로부터 會議의 召集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7條 (議事) 會議의 議事は 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8條 (報告)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議決된 重要事項에 關하여 遲滯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 (幹事) ① 委員會에 幹事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は 保健社會所屬公務員 中에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命한다.

③ 幹事は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庶務를 擔當한다.

第10條 (申告) ① 法 第45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의 申告는 定期申告와 臨時申告로 區分한다.

② 定期 申告는 每年 5月 1日 現在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5月 末日까지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但 外國에 滯在中인 者는 6月 15日까지 直接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臨時 申告는 保健社會部員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醫療行政上 特히 必要할 때에 하게 한다.

第11條 削除 <1965. 7. 29 大令 2184>

第12條 (醫療審議會의 組織) ① 法第23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委員15人 以內로써 組織한다.

②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13條 (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4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며 審議會를 代表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의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5條 (會議) ① 委員長은 審議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委員長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委員過半數로부터 會議 召集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 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6條 (議事) 會議의 議事は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17條 (報告) 委員長은 審議會에서 議決된 重要事項에 關하여 遲滯 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8條 (幹事) ① 審議會에 幹事 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は 保健社會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命한다.

③ 幹事は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會의 庶務를 擔當한다.

第19條 (運營規則) 本令에 規定한 것 外에 委員會 또는 審議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 또는 審議會의 議決을 얻어 當該委員長이 定한다.

第20條 (削除<1965. 7. 29 大令 2184>

第21條 (中央會設立認可) 中央會가 法第59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具備하여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定款
2. 事業計劃書
3. 資產明細書
4. 設立決議書
5. 設立代表者의 選出經緯에 關한 書類
6. 任員의 就任 承諾書와 履歷書

第22條 (定款記載事項) 法 第5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會의 定款記載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中央會, 支部, 分會의 所在地
4. 財産 또는 會計管理 運營에 關한 事項
5.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6. 會員의 資格 및 懲戒에 關한 事項
7.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8.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第23條 (定款變更認可의 申請) 法第59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央會가 定款變更의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具備하여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定款變更의 內容 및 그 理由를 記載한 書類
2. 定款變更에 關한 會議錄
3. 新舊定款對照表 其他 參考書類

第24條 (支部의 設置) 法第6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央會는 그 設立登記를 完了한 날로부터 3週日 內에 서울特別市와 道에 各各 支部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25條 (施行細則) 本令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 7. 29 大統領令 第2184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